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85
----------	------

제출연월일: 2025. 10. 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 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나. 위탁의 필요성

- 전문성을 통해 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 중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전반
- 그 밖에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

- 시설명: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 위치: 수탁 기관에 따라 변동 ※ 수탁기관이 센터 공간 자체 마련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결정

바. 2025년 소요예산: 3,445,156천원(국 2,313,855 시 1,061,476 구 69,825)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시설, 인력, 운영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정 보조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이 적절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업무수행으로 인력 관리 및 경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과 전문지식, 기술 등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함.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를 통해 성과 측정 가능 ○ 보조금 정산·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및 위탁·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 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며,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요구에 따른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3. 근거법규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승인 및 동의)

4. 참고사항

가. 아이돌봄 지원센터 현황

○ 시설개요

- 위치: 중구 광남17길 14(남외동, 1층)
- 규모: 37.1m²(11평)
- 운영주체: 사회적협동조합 봄비(대표 오현석)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 종사자: 5명(팀장 1, 팀원 4) ※ 아이돌보미: 170명

○ 주요 사업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센터인건비, 운영비,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교육비 지원

○ (2025년) 예산: 3,445,156천원(국 2,313,855 시 1,061,476 구 69,825)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3,445,156	2,313,855	1,061,476	69,825
운영비	258,131	180,692	77,439	0
사업비	3,047,375	2,133,163	914,212	0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5,250	0	2,625	2,625
아이돌보미 교통비	134,400	0	67,200	67,200

○ 위치도



근 거 법 규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 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3]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가정 및 아이돌보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인력 배치기준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삭제 <2016. 12. 27.>
지원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아이돌보미	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 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